

전문가 코칭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봉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돌아보기

윤리 연구소  
리보(LIBOR) 스캔들로 돌아보는  
금융기관의 윤리경영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주요 주체들의 인식조사 결과

# 기업윤리 브리프스

[ 특 집 호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국내 유일의 기업윤리 월간지  
2017  
**10**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 돌아보기



###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청탁금지법의 제정 과정에서 수많은 찬반 논란이 오갔지만, 이 법 시행 후 접대와 뇌물, 청탁 등 비리가 줄었다는 답변이 60.2%에 달했다. 유치원생들조차 이 법을 입에 올릴 정도였으니 일단 성공적 출발이다.

공직 분야에는 이미 청렴문화가 도입되고 익명신고 및 익명보상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도 이제 이 법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법은 공직자들에게 청탁 거부 핑계를 정당화시켜 주었고, 현장에서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이 현저히 줄었다. 심지어 언론은 위법 여부를 사전점검하는 절차까지 안내하고 있다. '선물 주는 사람이 공직자인가?', '공직자와 직무 관련이 있는가?' 이 경우 사교나 의례적 목적만 존재하는가?' 등이 사전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좋은 현상이다.

이른바 3-5-10 규정은 무엇보다 접대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제약업체의 접대행위와 리베이트, 건설업계는 턴키입찰을 대비해 사전에 골프나 식사접대를 하던 것도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실제로 대형제약업체 10개 중 8개사의 접대비가 대폭 감소했다는 보도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캔 커피가 사라졌고, 인사철 값비싼 난 행렬과 결혼식장 상가지집 화환들도 많이 줄었다. 스승의 날에 초·중등학교 교실에서는 종이카드를 그렸다. 하지만 고가의 고급 한정식 업체들이 줄 폐업했다거나, 지난 설날 때 선물세트 판매액이 과일 31%, 쇠고기 24.4%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먼저, 논란이 되는 직무, 직무관련성, 원활한 업무수행 등 개념의 불명확성이 신속히 제거되어야 하며, 신속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법 개정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동법시행령 45조에서 정한 바대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8년 12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둘째, 3-5-10 규정이 비교적 잘 정착되는 듯하지만, 특히 화훼, 한우 등 업계의 실제 피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구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것이 꼭 3-5-10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들이 많이 변화된 듯해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과거 관행을 답습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누군가의 신고가 없으면 더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물과 경조사비를 막을 수 없는 것은 한계이다.

셋째, 집행부서 공직자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까지도 과잉대응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일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전 2시간 특강, 오후 2시간 세미나 사회 진행을 했을 경우, 양자는 각 별개의 행위임에도 동일인의 행위라는 것으로 보아 하나만 적용하기도 한다.

넷째, 공직자들에게만 변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이 법은 실효성 잃은 종이호랑이가 될 우려가 크다. 정에 젖은 오랜 문화적 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법으로 인해 악의적 내부고발자가 발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인사 경쟁 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직간접적 방법으로 음해성 신고로 경쟁자를 낙마케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의의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내부고발자라는 미명으로 악의적 행태를 보이는 자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결코 보호받아서 안 될 범죄행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은 제대로 정착되기만 하면 오히려 적극적 행정,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윤리경영 Step by Step

## 정착기 1단계 - 성과보상체계

윤리경영의 정착기에 들어섰을 때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갖추어 구성원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발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Q.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성장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요?

기업의 가치와 윤리규정의 실행의지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지하기를 바라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해 기업의 구성원들이 알게 하고 그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보상체계의 구축은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과보상체계의 구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성과보상체계 구축의 목적

-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을 장려함으로써 윤리경영문화 확립
- 기업의 조직원 및 부서의 윤리경영 실천에 참여 확대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의 근절)
- 윤리·청렴문화의 확산으로 대외 이해관계자 (고객, 협력사 등)와의 신뢰 강화

### 2. 성과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 조건

-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성과보상의 공정성 확보 (예: 윤리경영평가를 경영평가지표(KPI)에 포함, 진단지표의 결과 분석 등)
- 회사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연결
- 회사의 가치, 윤리강령 및 준수 프로그램에 부합
- 윤리적 행동을 적극 장려하는 지속적인 재무적·비재무적 지원의 혼합적 방법 선별

### 3. 보상제도(재무적·비재무적 보상)

- 사내 윤리경영/청렴지수 우수자 및 부서 포상
- 청렴문화 콘텐츠 공모 우수자 포상
- 청렴 마일리지 등으로 경영평가/인사고과에 가점 부여
- 반부패·청렴 이벤트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사회봉사 활동 참여자에게 휴가 부여
- 불법이나 비윤리적 행위 신고에 대한 내부신고 인센티브제도

### 4. 보상제도의 효과

- 실천목표의 달성에 따른 성과보상은 임직원의 윤리실천의 동기유발

- 경영적 관점에서 최고 경영자의 인식이 비용관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전환
- 리스크를 파악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의지와 기대수준에 대한 전달 효과
- 리스크 완화 및 임직원이 '올바른' 일을 더 쉽게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윤리경영에 있어서 강제적 규정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갖추어 구성원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 타사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한국전력공사는 윤리경영 실천평가·보상제도를 사내, 임직원, 개인별로 실적 및 근무평가에 반영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였군요 .



#### 사업소 내부평가에 반영

자체 청렴도 조사 반영 및 교육실적 등 평가 (2004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업소 표창 및 포상 (2004년부터)



####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노력

#####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경영 계약서 반영 (2003년부터)  
직원 근무평점에 반영(1996년부터)



#### 개인윤리의식 점검시스템 시행

매주 1회씩 사내 인트라넷 이용 전 개인 윤리의식 확인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에만 초점을 둔 윤리경영이었지만 좀 더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여 다음 step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이 만든 변화

한 판사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변호사들이 판사에게 떡값을 돌리고 식사비를 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다. 시간이 흘러 대법관이 되고, 한 공공기관의 장이 되어서도 그녀는 그 이상한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관행, 관례란 이름으로 접대를 당연시하고 금품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은 다음 편의를 봐주는 모습. 그녀는 이 부당한 모습을 정당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고, 마침내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청탁금지법. 수년에 걸쳐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어느새 시행 1주년을 넘어섰다.

과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 이번 사례돋보기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011년, 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했다. 몇몇 업체가 이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했고, 업체 선정을 맡은 담당자는 고민 끝에 10%의 계약금을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공공기관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5%의 계약금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란 지시가 내려왔다. 담당자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임원의 지시를 거부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을 시키겠다'는 압박이었다. 결국 담당자는 5%의 계약금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적발한 감사원은 부당한 지시라며 상급기관에 인사 시 참고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고위 임원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지시했을 뿐 인사 조치를 운운한 적은 없었다"고 말하며, "해당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해명했다.

마침 소방서장은 서장실을 나와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을 불러 물었다.

“봐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

B사의 위반행위를 묵인하라는 취지가 엿보이는 소방서장의 지시에 직원은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소방서장의 묵인 지시를 받은 직원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조사결과, 소방서장은 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팀장에게도 B사의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소방서장의 부당한 지시가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의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부패행위를 처벌하다\_부정청탁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역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이전에는 청탁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대가성 금품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의 제공 여부, 부정청탁의 수행여부에 관계없이 청탁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 ▶ 고위 임원의 특혜

시행 전



### ▶ 소방서장의 질문

시행 후



2016년 11월 1일, 오후 5시 반쯤 한 사람이 소방서장을 찾아왔다. 미리 매제에게 연락을 받았던 소방서장은 흔쾌히 그를 서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소방서장을 찾아온 사람은 A사의 전무이사. 그가 속한 A사는 2016년 10월 중순부터 B사의 소방공사 감리를 맡고 있는데, 자신의 회사가 감리를 맡기 전인 2016년 9월 B사가 공사감리자 없이 자동화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방서에서 진행한 소방공사 현장 등에 대한 표본점검을 통해 소방서에서도 B사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10분가량의 대화를

## 부패행위를 처벌하다\_금품수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부당한 금품의 수수는 뇌물죄 등으로 처벌해왔다. 다만, 뇌물은 '직무의 대가로서의 부당한 이익'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의 여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수수가 인정되며,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공직자의 고액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 ▶ 가해자의 후배가 준 금품

시행 전



2008년,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입건된 사람의 후배에게 6번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관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가해자의 후배가 제공한 금품 향응의 출처가 폭행사건의 가해자임을 쉽사리 알 수 없었을 것이며, 폭행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향응과 금품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후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관의 금품 향응 수수는 폭행사건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 돈을 남기고 간 취객

시행 후



2016년 9월 20일 새벽, 한 편의점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의자 대기실로 데려왔다. 그런데 너무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취객은 그대로 바지에 실례를 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경찰들은 이를 수습하고, 난동을 피우는 취객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시간이 흘러 10월 15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던 피의자는 다시 경찰서에 와서 신문을 받고 조서를 작성했다. 일전의 사건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피의자는 담당 경위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자신의 명함과 함께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경위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경찰서를 떠났다. 자리로 돌아온 경위는 명함과 돈 봉투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이를 신고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금품 수수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담당 경찰관이 곧바로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금품이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게는 금품 등 가액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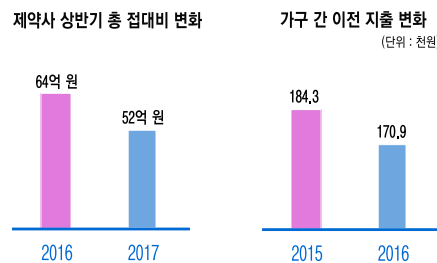
청탁금지법이 만든 문화

청탁금지법은 국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상에서, 다양한 기관의 조사결과, 이색적인 행사에서도 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실속 있는 명절선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자 유통업계는 5만 원을 초과하는 명절선물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맞춰 유통업계는 고가의 선물세트 대신 가성비가 뛰어난 실속형 선물세트의 비중을 늘렸다. 제품의 구성을 조정하거나 할인행사를 통해 5만 원이 넘지 않는 상품을 준비하여 법의 제한 없이 선물세트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통계가 보여주는 변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어떤 것들이 변화할지는 계속 초미의 관심사였다.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통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구 간 이전 지출(부모에게 보내는 돈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경조사비의 비중이 큰 편)이 작년에 비해 7.2% 감소하여 경조사비의 비중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 상장 제약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서도 제약업계의 접대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청렴을 위한 행사



기업과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 생각했던 뇌물, 청탁 등의 문제가 학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성립될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청탁금지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교육과 함께 이색적인 행사들이 이뤄졌다. 충북대학교에서는 청렴 공모전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청탁금지법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T 보험사의 경우 바뀐 스승의 날 문화에 혼란스러워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 학교에서의 추억을 응모하면 우수작을 뽑아 간식과 카네이션 등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아직도 법의 완화와 강화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부정행위에 대한 경계가 강해졌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맞춰 계속 변화해 가야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청렴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져 청탁금지법이 완화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 리보(LIBOR) 스캔들로 돌아보는 금융기관의 윤리경영



2013년 동양그룹 사태는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1조 3,032억 원의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한 뒤 9,942억 원을 지급불능 처리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를 벼랑 끝에 내몬 사건이다. 금융기관을 소유한 기업이 부실한 정보를 숨긴 채 고금리라는 미끼상품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완전히 우롱한 것이다. 당시 여러 증언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과정 이 불완전해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대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미 부실해진 회사가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채무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기채무”는 지탄받아 마땅한 위법행위의 전형적 모습이다. 금융기관의 사기나 기만행위가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올해 4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외화 시세조작 혐의로 독일 도이체방크에 1억5,66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이체방크는 외환 트레이더들이 다른 은행 트레이더들과 온라인을 통해 달러화 등의 시세조작을 공모한 사실을 포착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준법을 위한 도이체방크의 관리감독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 연준은 감독과 통제 강화라는 시정 명령도 같이 내렸다. 2015년 연준은 이미 외화 시세조작에 가담한 다른 6개 은행에 대해서도 18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중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으나 2012년 리보금리 조작을 비롯한 각종 파문에 시달려왔다. 해외 금융기관의 비윤리적 사례를 리보 스캔들을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 ▶ 리보(LIBOR) 스캔들은 어떤 의미인가?

2012년 7월 금융업계 외부에서 그 용어조차 생소한 ‘리보’라는 스캔들 기사들이 세계 각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 핵심은 영국,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급력이 큰 주요 은행들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 사건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리보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런던은행간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의 약자인 LIBOR는 1986년 완성된 제도이다. 당시 영국은행연합회(BBA)는 시중 우량은행들이 평일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자금조달 금리 수준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중 상·하위 25%를 제외한 중간치 50%를 평균한 리보금리가 발표됐고, 매일 변동했다. 리보는 모기지 대출, 파생상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백 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거래의 기준금리였다. 이런 금리를 만든 취지는 은행이 경제 상황을 낙관할 경우 금리는 낮아질 것이며, 반대로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

라는 생각에서였다.

은행들이 큰맘 먹고 리보금리를 '조작'해 수백 조 달러의 대출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윤을 챙길 수 있다. 반면, 주택대출금을 갚는 사람들과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학생 등 일반 서민들은 리보금리의 조작으로 원래 갚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은행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막대한 피해를 바탕으로 거대한 이윤을 챙겨왔다는 얘기가 된다.

### ▶ 리보 스캔들의 경제적 피해와 조작 이유

2008년 5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내부고발로 리보금리조작 수사에 처음으로 착수했다. 2010년 CFTC는 금리조작의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여 영국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사건수사가 영미의 공조 하에 진행됐다. 2012년 영국과 스위스, 미국 금융당국은 라보은행과 UBS,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10여 개 은행

이 수년간 담합해 리보금리를 낮춘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나자 10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리보 금리 조작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막대했다. 2012년 7월 당시 금융피해액이 약 170억 달러에 달했고, 리보조작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부동산담보대출이자 손해액만 해도 약 90억 달러에 달했다.

리보조작의 이유는 금융위기 시기에 은행들은 자체 조달 금리를 낮게 보고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실제로는 기만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트레이더들이 파생금융상품으로 돈을 벌 수 있게 금리신고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 금리조작으로 투자자도 속이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인 셈이다. 은행들이 리보금리를 낮게 조작하면 리보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자를 받는 채권 투자자나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이득을 보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들 모두 손실을 본다. 반대로 은행들은 리보를 조작한 뒤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 상황에서 바클레이스와 같은 은행은 자사의 신용등급을 위해 리보를 낮게 조작한 것이다. 일반기업으로 치면 기업이 멀쩡하다고 선전하기 위해 회사채를 낮은 금리에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사기를 친 셈이다. 이것은 자신의 조달 금리를 스스로 보고하는 금융기관의 특권을 악용할 수 있는 리보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것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금융허브 런던발 금융시장 신뢰위기

영국 런던은 유럽통합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금융허브로서 독자적 번영을 누리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금융업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곳이다. 글로벌 상위 15개 은행이 런던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만 7만 개에 이른다. 런던이 영국에서 나 홀로 발전이 가능했던 것도 금융업 효과였다. 런던은 가장 큰 외환시장이자 금 거래 시장이며, 온갖 장외파생상품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이 런던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다. 런던 금융업 종사자들의 84%가 유럽연합 잔류를 희망한 것도 그들의 존재증명이 유럽 속의 런던 금융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안긴 리보 스캔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런던의 허브적 위상을 떨어뜨린 사건임이 틀림없다.

또한 리보금리조작 파문으로 영란은행(BOE)을 비롯해 영국 정부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업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폴 터커(Paul Tucker) 영란은행 부총재가 바클레이스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화해서 리보금리를 낮추어 제시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리보 스캔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클레이스 등 몇몇 은행에게 입은 직접적인 금융피해 외에 금융시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금리의 불신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 금융기관의 윤리경영

리보금리는 전혀 신뢰할 만하거나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국 시중은행의 편의에 따라 어림짐작으로 결정됐다. 조작 스캔들로 얼룩졌던 리보가 4년 뒤 사라질 조짐이 보인다. 영국 금융감독청(FCA) 베일리 청장은 리보가 적절성을 잃어 2021년 말까지 “더 신뢰할만한 대안”제도로 교체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대안기준금리위원회(ARRC)도 환매조건부채권 레포(repo)금리를 리보의 대안으로 권고한 바 있다. 리보의 대안 마련과 함께 금융기관의 윤리경영 소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높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주요 MBA 과정에서 윤리교육을 강화한 것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금융 스캔들을 피하려면 금융규제 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중 금융기관의 자율권에 의존하는 방식이 가진 한계를 리보스캔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금융내부의 비리는 내부자의 고발이나 증언 없이는 중대 과실이 밝혀지기 어려우므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금융당국 규제가 금융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은 뚜렷한 명분과 원칙 속에 더욱 윤리적이고 투명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 경영위험을 피하고 기업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영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한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우리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주요 주체들의 인식조사 결과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을 역사적 의미를 가진 법안으로 평가받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기대와 우려의 상반된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접대문화 관행이 사라지고 국가청렴도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농·수·축산·화훼 유통업의 판매 감소와 관광·서인근 음식점업의 매출 하락 등 부정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품수수를 '직무관련성'이라는 포괄적 틀 안에서 규제하고 있다. 또한, 법 적용대상자도 공직자를 포함해서 언론사 임직원, 공·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으로 확대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산으로는 그 수가 400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그 적용 범위가 넓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논란의 소지도 많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즈음해서 국민의 인식과 행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7년 8~9월 사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청탁금지법 주요 주체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법 시행 후 국민의 기대, 호응, 우려가 지난 1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2016년 11월 총 조사 이후 두 번째 실시한 이번 인식조사는 일반국민(1,000명)/법 적용대상(공직자 800명, 언론인 204명, 교육계 406명)/영향업종(음식점업, 농·수·축산·화훼 유통업 600명) 등 총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전반적인 여론 및 호응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일반국민(89.2%),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5.0%), 교원(88.2%)은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집단은 작년 대비 긍정적 응답이 소폭 증가한 반면, 언론인의 경우 62.3%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오히려 5.2%p 감소했다. 또한, 일반음식업, 농·수·축산·화훼 유통업 등 영향업종의 경우 61.2%가 법 시행에 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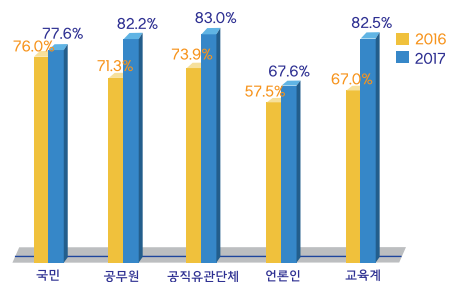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무난하게 정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반국민 69%, 공직자 90%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영향업종의 경우 55%가 긍정적이었고, 언론인의 경우 가장 낮은 51.0%가 긍정적 응답이었다.

### ▶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인한 인식과 행태 변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인 부탁, 접대, 선물 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공

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원 등의 경우 이 응답은 80%를 상회한다. 이 결과는 기존 관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관행적인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



일반국민들의 행태변화 인식은 △식사, 선물 금액감소 및 지불방식 변화(69.8→64.9%), △공직자와 만남, 접촉 감소(75.3→56.6%), △공직자에 대한 부탁, 요청 감소(68.3→62.1%) 등의 모든 조사에서 작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특히 “공직자와의 만남이나 접촉 감소” 응답은 18.7%p



감소했는데, 이는 법 시행 직후 나타난 ‘과도한 움츠러들기’가 완화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만남 감소(평균 75.3→82.2%), 인맥을 통한 부탁 감소(평균 67.3→82.2%) 응답이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공직자들이 업무상 받는 청탁은 분명히 감소하였을 것이다.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 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에 일반국민 57.1%가 긍정적 응답을 한 반면, 법 적용대상자들은 평균 75.6%가 긍정적이었다.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법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일반국민의 응답은 87.3%로 작년 대비 3%p 증가했다. “공직 사회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일반국민의 경우 79%로 높은 수준이었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은 24.3%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부정적 인식은 작년 대비 모든 집단에서 감소했다. 특히 언론계에서 12.5%p나 감소한 이 조사결과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저인망식 규제”등의 비판이 별로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느냐”는 질문에 일반음식업의 49%, 농·수·축산·화훼업의 6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업종 전반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음식점(67.0%)과 농·수·축산·화훼업(79.0%) 모두 본인 사업체의 매출 현황보다 더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영향업종의 긍정적 인식효과를 떨어뜨려,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52.7%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영향업종 사업체의 47%가 법 시행으로 인해 알뜰구매, 더치페이, 가족단위 소비 증가 등 고객 소비행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고객들의 편법사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도 일반음식업 46.3%, 농·수·축산·화훼업 52.0%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런 편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적 쟁점 사항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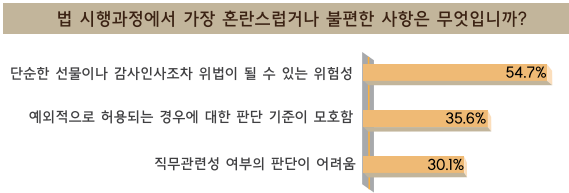
청탁금지법이 정한 3-5-10 가액기준에 대해서 대체로 현행 상한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나 언론계와 영향업종에서

는 너무 낮다는 응답이 다수 존재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준금액(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일반국민 45.1%, 공무원 43.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9.7%, 교원 36.0%가 찬성한 반면, 언론인과 영향업종에서는 각각 55.4%와 68.2%가 찬성해 이 집단에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한도 규정은 대학교수(58.1%)를 제외한 모든 법 적용 직군에서 잘 준수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외부강의 등 관련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신고대상 범위의 불명확성”(58.8%)과 “신고처리 절차의 복잡성”(48.0%)이 가장 많이 문제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강의 등 현행 사례금 기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대학교수(40.0%)를 제외한 모든 직군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한 개선 및 보완사항

청탁금지법의 불확정성 개념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했다. ‘직무관련성’, ‘사회상규’등 법적 요건의 모호성 때문에 자신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사항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단순한 선물이나 감사 인사조차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성”(54.7%),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함”(35.6%),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움”(30.1%) 순으로 답변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시민들이 청렴 및 윤리 의식을 높여나갈 때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이 가능하다. 국가 규제로 시작된 청탁금지제도가 시민사회의 자발적 윤리강령 채택 및 실행이라는 자율규제 단계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직종별로 실생활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과 직접 연결된 민간분야에서 청렴인센티브 정책의 도입이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청탁금지법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 국내동향

### 1 내부신고로 공기업 아파트 건설 '뇌물·금품수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관련한 공기업 직원들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내부신고를 조사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이와 같은 부패행위를 적발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도의 모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권익위는 처음 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65506>

### 2 14개 위험작업 도급 전면금지... '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정부는 8월 17일,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사망 사건과 같은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하청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강화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안'을 내놴다. 이는 경영이 열악한 하청업체만 처벌하지 않고, 작업을 맡긴 원청도 똑같이 처벌해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배달대행 근로자들과 퀵서비스 기사들을 위한 보호 방안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참고: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70818/85874659/1#sidx737fe0763d60d08b4ad07da89553828>

### 3 美 고어의 갑질에 과징금 37억 원



공정위는 8월 27일 고어사가 자사 원단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고어텍스 사용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것에 대해 미 고어 본사, 아태지역본부, 한국지사 등에 총 36

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조사가 의류, 신발 등에 고어텍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어사로부터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 고어사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제한 방침을 정하고 이를 통보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2017082700527.htm#csidx30a76c4a52509bfb98ec8ef1e1b033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2017082700527.htm#csidx30a76c4a52509bfb98ec8ef1e1b0333)

## 해외동향

### 1 美증권거래위, 기업비리 제보 공무원에게도 28억 원 보상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회계부정이나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제를 운영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 내부고발제도의 도입 이래 최초로 정부 공무원에게 250만 달러(28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제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SEC는 지난 7월 25일 해당 공무원의 제보 덕분에 "한 기업의 비위에 대해 SEC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의 지속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지급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SEC는 고발자 보호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원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31/0200000000AKR20170731110700009.HTML>

### 2 KPMG, 부실감사로 벌금 620만 달러 내야



글로벌 회계 및 컨설팅 기업인 KPMG가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62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다고 8월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SEC에 따르면 KPMG는 지난 2011년 원유 기업인 밀러 에너지 리소시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당시 원유와 가스 자산에 대한 분식회계에 대해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KPMG는 벌금 지불에 합의하고 향후 2년 간 상장된 기업의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유예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참고: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70816/1071205>

### 3 英 맥도날드 직원들 1974년 이후 처음으로 파업



영국 내 맥도날드 직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9월 4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가 지난 1974년 영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첫 파업이다. 맥도날드 직원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제로아워 계약'은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임시직 계약을 한 뒤, 일한 만큼 시급을 받는 형태다. 이 계약은 그동안 법적 근무시간과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노동 조건도 보장받지 못해 사실상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은 시간당 10파운드의 임금과 고정된 근무시간, 노동조합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5/2017090502306.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5/2017090502306.html)

## 국내행사

### GRI 지정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실무

주최: 한국표준협회  
일시: 2017년 11월 23일~24일  
장소: 서울, KSA가산디지털센터

### 제11차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주최: 환경규제대응 아카데미  
일시: 2017년 10월 20일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해외행사

###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공동행동 국제석사과정 (IMACC) 개설

주관: 국제반부패아카데미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자격: 학사학위자로 민간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등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영어필수)  
신청: ~ 2017년 11월 1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접수)  
<http://www.iaca.int/academic-programmes/imacc.html> 참조

### Asia Pacific Anti-Corruption Conference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및 컨퍼런스)

주최: 국민권익위원회, ADB/OECD 사무국  
일시: 2017년 11월 15일~16일  
장소: 서울,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느끼는 차이가 있다면? ”

**W 제약 S 대리** 청탁금지법 때문에 접대비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영업직이 아니라서인지 저는 잘 체감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외부 미팅을 나갈 때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많이 느껴요. 공직자 분들은 먼저 자기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더치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L 사 N 플래너** 얼마 전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형 제품으로 바꾸면 선풍기를 선물로 주는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제 담당 구역 경찰서에서도 제품을 신형으로 바꾸어 선풍기를 보내드렸는데, 며칠 후 신형 제품을 잘 쓰고 계신지 확인차 연락했더니 선풍기를 어디서 보낸 것인지 확인하지 못해 쓰지도 못하고 두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청탁금지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나자 청탁금지법이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맞혀보세요

“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가져 온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

- ① 공직자들이 청탁 거부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문화로 변화하며 부정청탁이 줄어들었다.
- ② 공직 분야에 청렴문화가 도입되고 익명신고 및 익명보상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 ③ 3-5-10 규정으로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 ④ 접대문화의 양성화로 대부분의 제약업체 접대비가 증가하였다.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kwb1212@korea.kr](mailto:kwb1212@korea.kr)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호 정답: 1번

지난 호 정답자는 황석우님, 최재욱님, 김지선님, 김종주님, 조진혁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배님의 조언



알아봅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제24조(양벌규정)**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종업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 ▶ (법인)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

# 기업유리 브리프스

2017  
**10**

